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95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황운하 · 서왕진 · 정춘생
김준형 · 차규근 · 이강일
장종태 · 강경숙 · 신장식
김선민 · 김재원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한편,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며,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

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되어,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이에 법 제2조에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노대(露臺)”란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말한다.

제4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노대(露臺)”란 2층 이상 건축물의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뜰 바닥이나 마루를 말한다.</u>
7. ~ 21. (생략)	7. ~ 21. (현행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⑤</u>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